

서울특별시 침수 방z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김경 의원 외 13명
- 나. 의안번호 : 제 1360 호
- 다. 발의일자 : 2023. 10. 16.
- 라. 회부일자 : 2023. 10. 23.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침수 방z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고 규정된 부분에 반지하, 지대가 낮은 지역 등 구체화 된 예시를 추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침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이하 “시”) 관내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에 대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7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②·③ (생략)</p>	<p>제7조(비용 지원) ① ----- ----- <u>다음 각 호의 지역</u> ----- ----- -----.</p> <p>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p> <p>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p> <p>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p> <p>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p> <p>②·③ (현행과 같음)</p>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현황

- 시는 2022년 침수피해를 겪으면서 현행 조례 제7조1)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2) 등에 근거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자치구와 함께(시비50:구비50) 침수취약지역 주택(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포함) 등에 물막이판, 옥내역지변(역류방지 밸브), 수중펌프(양수기), 집수정(물저장고)과 같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최근 5년간 침수취약지역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현황

(’23. 9. 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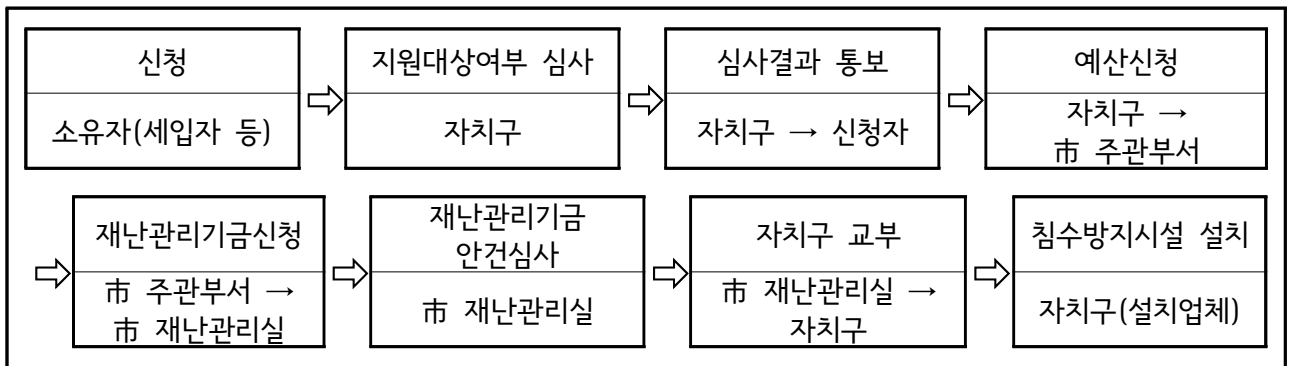
연도	가구수	사업비 (백만원)	시설 구분			
			물막이판(개)	옥내역지변(개)	수중펌프(대)	집수정(개소)
합계	48,052	88,192	87,885	102,715	541	78
2023	15,587	40,812 (시:20,406 구:20,406)	31,442	27,047	73	-
2022	11,696	18,242 (시:8,460 구:9,783)	21,633	24,086	274	-
2021	7,052	10,280 (시:4,735 구:5,545)	12,150	18,408	34	3
2020	6,849	9,898 (시:4,894 구:5,004)	12,315	17,202	51	28
2019	6,868	8,960 (시:4,453 구:4,527)	10,345	15,972	109	47

- 1)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의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 나. ~ 마. (생략)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2023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실적 (9. 30기준)

연번	자치구	가구수	사업비(백만원)			시설 구분			
			계	시비	구비	물막이판(개)	옥내역지변(개)	수중펌프(대)	집수정(개소)
	계	15,587	40,812.8	20,406.4	20,406.4	31,422	27,047	73	-
1	종로구	105	523	261.5	261.5	317	246	-	-
2	중구	14	29	14.5	14.5	22	-	1	-
3	용산구	418	1,600	800	800	770	841	1	-
4	성동구	703	1,400	700	700	1,544	1,264	-	-
5	광진구	360	1,200	600	600	1,015	643	-	-
6	동대문구	169	862	431	431	288	122	-	-
7	종랑구	478	1,084	542	542	996	668		
8	성북구	456	1,020	510	510	1018	628	-	-
9	강북구	686	1,600	800	800	1,539	832	-	-
10	도봉구	430	1,093	546.5	546.5	1,407	1,560	-	-
11	노원구	335	1,110	555	555	927	481	-	-
12	은평구	544	1,440	720	720	648	596	-	-
13	서대문구	224	600	300	300	465	308	-	-
14	마포구	492	1,600	800	800	1,731	631	-	-
15	양천구	594	1,614.8	807.4	807.4	1,209	688	8	-
16	강서구	360	1,400	700	700	793	693	4	-
17	구로구	650	2,091	1,045.5	1,045.5	650	108	2	-
18	금천구	562	1,200	600	600	1,418	636	-	-
19	영등포구	1,709	4,000	2,000	2,000	2,558	2,407	-	-
20	동작구	1,013	2,300	1,150	1,150	2,072	2,503	-	-
21	관악구	2,843	7,904	3,952	3,952	4,818	8,094	-	-
22	서초구	608	1,600	800	800	1,109	859	10	-
23	강남구	510	1,342	671	671	1,241	688	47	-
24	송파구	603	720	360	360	1,267	713	-	-
25	강동구	721	1,480	740	740	1,600	838	-	-

[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체계도 (매월 재난관리기금 심의요청)



■ 개정안 검토

- 안 제7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를 신설하려는 것은 현행 제7조제1항이 시장으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지원 대상을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상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이는 행정안전부가 '23. 1. 5일 시로 통보³⁾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이하 “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지원 대상([표] 참조)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하겠음.
[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 ~ 제13조 (생략)

- 안 제7조제1항제1호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⁵⁾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⁶⁾에 해당하며,

- 다음으로, 제2호는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재발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여겨짐.

-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103, 2023. 1. 5.)
- 4)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6)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또한, 제3호의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은 2022. 8. 8.일 수해 당시 도림천 붕괴사고 등을 감안할 때 이 역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 마지막으로, 제4호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침수 예상 지역에 대한 사전 조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상으로써 의미가 크다 하겠음.
- 다만, 동 개정안이 침수 방지지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을 현행 포괄규정에서 세부적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는바, 안 제7조제1항 각 호 신설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침수 방지지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대두됨으로,
-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 방지지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제5호로 추가 신설하여 개정안이 신설하고 있는 제1호부터 제4호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중 시장이 판단할 때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침수 방지지설 설치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안 제7조제1항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7조(비용 지원) ① (생략) 1. ~ 4. (생략) <div style="text-align: right;"><신 설></div>	제7조(비용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u>5.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 방지지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u>

- 참고로, 본 개정안이 표준조례안의 제6조제2항제3호와 제5호를 인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표준조례안 제3호의 경우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⁷⁾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시가 현재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침수피해 지역 및 단지의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표〕 참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이해됨.

[표] '23년 자치구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지원 내역('23. 3월 기준)

연번	자치구	설치 현황(단지 수)					예산 현황(천원)		비고
		대상 단지	지원 단지	미희망 단지	추가 단지	합계	자치구 교부	집행	
합	계	82	74	8	26	100	800,000	304,886	
1	광진구	4	4		0	4	15,000	10,863	
2	종랑구	6	6		0	6	20,000	17,828	
3	성북구	1	1		0	1	7,500	7,500	
4	서대문구	0	0		4	4	37,500	12,182	
5	양천구	17	14	3	1	15	122,500	38,922	
6	강서구	3	3		2	5	30,000	11,720	

- 7)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 21. (생략)

7	구로구	0	0		2	2	5,000	0	자치구 자체 예산
8	동작구	22	22		2	24	222,500	104,282	단지 자체설치1 포함
9	관악구	0	0		9	9	17,500	0	자치구 자체 예산
10	서초구	10	10		4	14	115,000	62,138	
11	강남구	11	11		0	11	130,000	29,166	
12	송파구	1	1		0	1	20,000	0	단지 자체 설치
13	강동구	7	2	5	2	4	57,500	10,285	

- 표준안 제5호도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와 연관된 지역이 없어 이를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한편, 표준안은 제6조제2항에서 지원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대상 지역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순위를 책정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는 시장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입각할 때 본 개정안이 표준안에 비해 현실성이 있다 사료됨.